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세출예산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26억 56백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6백만 원 순증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0	0	2,655,959		2,655,959		순증
행정·관리	소 계	0	2,655,959		2,655,959		순증
	행정운영경비	0	127,665		127,665		순증
	재무활동	0	0		0		0
	사업비	0	0	2,528,294		2,528,294	
교 부 금	0	0	0		0		0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증감	비율	당초	최종
합 계	0	0	2,655,959	2,655,959	순증	0	순증
부서 : 약자와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0	0	1,436,524	1,436,524	순증	0	순증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0	0	1,343,894	1,343,894	순증	0	순증
약자와의동행 지원기반 마련(일반회계)	0	0	54,200	54,200	순증	0	순증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0	0	54,200	54,2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동행 가치 확산 제고(일반회계)	0	0	1,289,694	1,289,694	순증	0	순증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0	0	560,694	560,694	순증	0	순증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0	0	280,000	280,0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0	0	449,000	449,000	순증	0	순증
행정운영경비	0	0	92,630	92,630	순증	0	순증
기본경비	0	0	92,630	92,630	순증	0	순증
기본경비	0	0	92,630	92,630	순증	0	순증
부서 : 약자와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0	0	1,219,435	1,219,435	순증	0	순증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0	0	1,184,400	1,184,4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동행 기반 조성(일반회계)	0	0	1,184,400	1,184,4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0	0	146,000	146,0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0	0	1,007,000	1,007,000	순증	0	순증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0	0	31,400	31,400	순증	0	순증
행정운영경비	0	0	35,035	35,035	순증	0	순증
기본경비	0	0	35,035	35,035	순증	0	순증
기본경비	0	0	35,035	35,035	순증	0	순증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56백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6백만 원 순증하였음.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0	0	2,655,959		2,655,959		순증
행정관리	소 계	0	2,655,959		2,655,959		순증
	행정운영경비	0	127,665		127,665		순증
	재무활동	0	0		0		0
	사업비	0	0	2,528,294		2,528,294	
교 부 금	0	0	0		0		0

-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해 2023회계연도에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7개 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정책/단위/ 세 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0	0	2,655,959		순증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0	0	1,343,894		순증
약자와의동행 지원기반 마련	0	0	54,200		순증
약자와의동행 가치 확산 제고	0	0	1,289,694		순증
행정운영경비	0	0	92,630		순증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0	0	1,184,400		순증
약자와의동행 기반 조성	0	0	1,184,400		순증
행정운영경비	0	0	35,035		순증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재무활동	0	0	0		순증

- 전 사업 모두 신규사업으로 총 7건(25억 27백만 원)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신규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신규사업	0	2,527	-	순증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0	54	-	순증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0	560	-	순증
약자외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0	280	-	순증
약자외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0	449	-	순증
약자외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0	146	-	순증
약자외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0	1,007	-	순증
약자외의 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0	31	-	순증

1)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별설명서 p.17)

-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 사업 및 정책방향 심의·자문을 위한 것으로 54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예산편성 내역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54,200	(x-) 54,2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29,200	(x-) 29,200	(x-) 100
국외업무여비	(x-) 0	(x-) 0	(x-) 20,000	(x-) 20,000	(x-)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0	(x-) 0	(x-) 5,000	(x-) 5,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의견 수렴과 약자동행 가치 확산 등을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실무자 및 종합적 시각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임.
- 현재 관련 조례 미비로 ‘약자동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추진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임시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이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할 계획에 있음.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임시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실국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생계(복지정책실), 주거(주택정책실 및 도시계획국), 교육(평생교육국), 의료(시민건강국), 기타(도시교통실-이동권약자) 등 분야별 약자동행 전문가 및 실무자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음.

<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계획

< 조례 제정 전 : 임시위원회 운영 >

- 위원회 발족을 위한 최초 회의 및 임시회의(사안 발생 시) 개최
- 약자와의 동행 추진현황 확인 및 발전방안 자문
- 약자동행위원회 정식 발족을 위한 인력풀 추가 구성 논의 등

< 조례 제정 후 : 조례상 위원회 운영 >

- **분위원회** : 정기회의(연 1회 이상)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분과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개최
 - 주요분야(생계·주거·의료건강·교육문화·안전) 및 현안 분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약자동행 유형별 효율성 제고
 - 사안 발생 시, 분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실무자·전문가 추가 구성
- **주요역할**
 -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조정·자문
 -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예산담당관 협조)
 - ▶ 예산편성과의 유기적 연계로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 담보
 - ▶ 약자동행위원회 심의에 기반하여 사업별 예산 배정등급 조정
 -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서울시 약자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권이 ‘약자 동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므로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약자동행지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면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배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각 사업별 집행추이와 사업실적에 따른 재구조화가 동반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약자 동행 지수 등락에 따른 실국별 리스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통계목별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약자 동행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따라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설 정 (통계 목 포함)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출처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예산 산출근거 〉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6,000천원 - 본위원회 200,000원*30명*2회 = 12,000천원 - 분과위원회 200,000원*5명*4회 = 4,000천원 ○ 회의 운영비 및 자료 제작 등 = 13,200천원 - 본위원회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4,000,000원*2회 = 8,000천원 - 분과회의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1,300,000원*4회 = 5,200천원
	증감사유	
	○ '23년 사업 최초 시행에 따른 사업 운영 예산 편성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 20,000천원
	증감사유	
		○ '23년 사업 최초 시행에 따른 사업 운영 예산 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 취약계층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약자동행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

-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및 인식 전환 제고를 위해 추진 하려는 것으로 5억 61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예산편성 내역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560,694	(x-) 560,694	(x-) 10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x-) 0	(x-) 0	(x-) 7,694	(x-) 7,694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20,000	(x-) 20,000	(x-) 100
행사운영비	(x-) 0	(x-) 0	(x-) 490,000	(x-) 490,000	(x-)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0	(x-) 0	(x-) 25,000	(x-) 25,000	(x-) 100
특정업무경비	(x-) 0	(x-) 0	(x-) 18,000	(x-) 18,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정책박람회, 심포지엄,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자 동행' 가치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을 대내외 전파하여 사회 전반의 '약자 동행' 가치 인식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3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은 '23년 10월 중 4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박람회, 심포지엄을 통해 약자동행 주요정책 홍보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토론을 운영하고, 토크콘서트 및 전시회를 통해 약자와의 인터뷰, 기업제품 전시 및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음.
- 2022년 제8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2022.10.17.)을 받아 심사 결과에 따라 '행사운영비' 30백만원 을 감액1)하였으나, 정책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초청대상과 홍보대상을 구분하여 '약자동행'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2년 제8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결과 세부내용

사업명	2. 2023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부서명	동행정책담당관
심사결과 및 내용	<p>(조건부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 설정 ○ 행사 규모 조정 및 예산 축소 검토 후 사업추진
사업비	520백만원 (전액시비)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

3)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사업별설명서 p.26)

-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어울림 행사 체험을 통해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2억 80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예산편성 내역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본예산	최종예산 (A)			

1) 당초 기획예산 520,000천원 → 490,000천원

					A
계	(x-) 0	(x-) 0	(x-) 280,000	(x-) 280,000	(x-) 100
행사운영비	(x-) 0	(x-) 0	(x-) 280,000	(x-) 280,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오픈된 공간(서울광장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3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총 5회 실시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음.

〈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추진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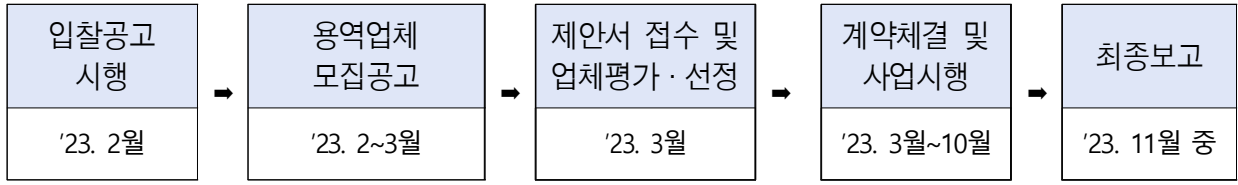
□ 추진 개요

- 행사명 : '약자와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행사
- 추진기간 : '23. 4월. ~ 10월 ※ 총5회(월1회), 7·8월 하절기 제외
- 대상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있는 자(개인, 단체 등)
- 주최/장소: 서울특별시/서울광장
- 행사내용 : 토크콘서트, 어울림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토크콘서트	어울림 체험행사	
	뉴스포츠 체험	체험 프로그램
유명 장애인 초청 공연(연주)와 토크를 번갈아가면서 진행	운동약자도 할 수 있는 뉴스포츠 체험 1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휠체어체험 5월 암실체험 6월 가치봄영화관람 9월 작품전시회, 플리마켓 10월 교통약자체험, 임산부체험

※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전문행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80,000천원

○ 체험 프로그램

- 매달 대상 약자를 선정하고 그 약자들의 입장을 체험해봄으로써 약자동행의 가치를 인식하고
배려의 필요성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시기	프로그램	체험 내용
4월	휠체어체험	직접 휠체어를 타고, 밀면서 설치된 구조물(방지턱, 난간)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
5월	암실체험	암실을 설치하여 그 속에서 시각장애이용 흰지팡이를 이용해 길을 찾고, 암실속에서 간단한 활동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체험
6월	가치봄영화관람	가치봄영화(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을 같이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9월	도예체험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지도하에 간단한 도예체험을 하며 함께 어울려보는 프로그램
10월	교통약자체험, 임산부체험	노약자, 임산부의 입장이 되어 건물목 건너기,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약자 체험

※ **가치봄영화** :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배리어프리 영화)



<휠체어체험>



<암실체험>



<가치봄영화관람>



<도예체험>



<교통약자체험>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

-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인 체험, 청각장애인 체험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장애인 체험으로 편중돼 있어 장애 인권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에 ‘장애 체험’은 장애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만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
-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불리하고 부당한 처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존의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으로써,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정책 개발에 있어 공감 및 공존 실현 가능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번 사업의 전체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는바, 운영업체 선정 및 홍보물 제작 등 실질적인 업무추진 비목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4)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별설명서 p.29)

-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4억 49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예산편성 내역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449,000	(x-) 449,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444,000	(x-) 444,000	(x-)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0	(x-) 0	(x-) 5,000	(x-) 5,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시급성, 효과성 있는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약자동행 사업 및 행사에 대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안내서, BI(브랜드 및 슬로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려는 것으로써 정책 홍보 관련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시·자치구 관련기관 약자동행 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것인바, 이는 약자 관련 정책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정량적으로 표출 가능하거나 성과가 명확히 나타났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예산 산출내역(안) 〉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사 무 관리비	· 동영상·카드뉴스*	200,000	※ 분량 및 편수에 따라 세부금액 변동있음
	- 동영상 6개	180,000	
	- 카드뉴스 10회	20,000	
	· BI	20,000	
	· 정책 안내서	18,000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시책업무 추진비	· 언론·미디어 매체 홍보	200,000	
	·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인식개선 특강	6,000	
	· 약자동행 정책 홍보 및 교육 운영·준비	5,000	
계		449,0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5)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별설명서 p.35)

-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회의, 자문회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1억 46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예산편성 내역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46,000	(x-) 146,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102,000	(x-) 102,000	(x-)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0	(x-) 0	(x-) 10,000	(x-) 10,000	(x-) 100
포상금	(x-) 0	(x-) 0	(x-) 34,000	(x-) 34,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기관별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 협력 모델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포상금 지급을 통해 대내외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예산 산출내역 〉

□ **소요예산 : 146,000천원**(100% 시비)

구 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146,000	
사무관리비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회의 등	102,000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회의, ○ 우수사례 발표회 ○ 자치구 및 관련기관 협력모델 발굴
포 상 금	우수기관 포상	34,000	○ 약자와의 동행 사업 우수기관 포상 - 대상 5,000천원 × 1개 - 최우수상 3,000천원 × 3개 - 우수상 2,000천원 × 5개 - 장려상 1,000천원 × 10개
시책업무추진비	약자와의 동행사업 의제 발굴	10,0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다만,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 편성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하며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은 불가한바,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그룹	편성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5. <u>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u>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02. 성과상여금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2. 공무원직(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	

출처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6)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사업별설명서 p.39)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10억 7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예산편성 내역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007,000	(x-) 1,007,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7,000	(x-) 7,000	(x-) 10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0	(x-) 0	(x-) 1,000,000	(x-) 1,000,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총 1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2)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절차(투자 심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이행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적정(2022.10.26.) 판단을 받은 바 있음.

-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3)과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함에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조례 미비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을 제출하였는바, 법령을 준수한 예산편성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 2)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별표 3

지방보조금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등

③ 예산편성 원칙

-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출처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7)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별설명서 p.42)

- 이번 사업은 정책 아이디어 제안 환경 마련 및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31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예산편성 내역〉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31,400	(x-) 31,4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12,400	(x-) 12,400	(x-) 100
기타보상금	(x-) 0	(x-) 0	(x-) 19,000	(x-) 19,000	(x-) 100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 이번 사업은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민주주의포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온라인 공론장을 활용해 제안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2개월마다 5개 분야 (생계, 주거, 교육·문화, 의료·건강, 기타·안전)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정책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주 제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제안
- 제안창구 : 민주주의포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활용
- 제안서 의견 수렴 양식은 부서 간 협의 후 세부 결정
- 제안기간 : '23. 1월 ~ 12월

- 제안대상 : 시민 누구나(제한없음)
- 운영방식 : 상시 접수
 - 시민 인식 의견 수렴 : 약자동행 최우선 지원 필요 분야
 - 2개월마다 ‘약자동행 정책’ 5대 분야(생계, 주거, 교육·문화, 의료·건강, 기타·안전)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우수 제안 발표회('23.10월 예정)
 - 사업 타당성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제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반기 결산 및 정책 발표회
- 사업예산: 10백만원
 - 주제별 우수제안 포상 : 6,400천원 / 참여독려 사은품 등 : 600천원
 - 홍보물(포스터,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 3,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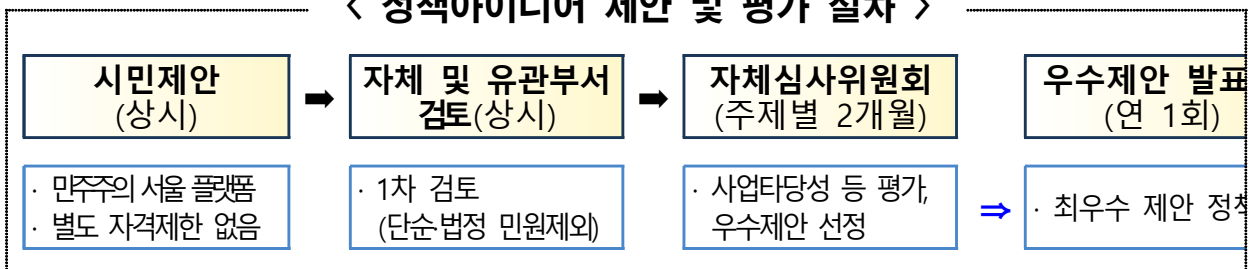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 다만 정책 아이디어 심의 시,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약자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가칭)에 근거한 ‘약자 동행위원회’도 구성 예정이므로 조례 내 명확한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추진계획〉

② 정책 아이디어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책아이디어 제안 및 평가 절차 〉



□ 사업개요

- 사전검토 : 시민 제안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유관부서 검토
 - 정책 대상(약자)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확인
 - 민원성 제안, 중복·법정 사업, 장기(다년간) 예산 소요 사업 등 제외

○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 5인 내외(외부 3인, 내부 2인 등)

- 외부 심사위원은 생계, 주거, 교육문화, 건강의료, 기타(안전 등) 분야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서울 특별시 약자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23.2.)이후 구성된 위원회 일부 추천 및 분야별 정책 주제와 관련된 부서 추천받아 구성
- 시민 아이디어 평가 기준(안)에 의거 정책검토·평가 및 의견 제시

○ 평가기준표(안)

평가 항목	평가표	
	평가 사항	비중
사다리지원	◦ 단순 지원 보다는 계층상향 또는 자립 안정을 유도하는 사다리 사업 여부	35
의제 형성	◦ 현안 이슈에 맞는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제안인지	20
효과성	◦ 정책 수혜대상의 수와 범위의 확장 가능성(약자지원 사업이면서 다수의 일반시민 수혜가능 여부)	30
사업집행	◦ 집행과정에서 역효과가 없는 제안(낙인효과나 역차별 등 최소화) 여부	15
총 점		100

○ 운영주기 : 약자동행정책 5대분야 주제별 2개월

○ 사업예산: 6.4백만원(심사위원 수당)

출처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 예산편성 항목 내 '기타보상금'은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바, 이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규정 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타 보상금 예산편성 원칙 >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p>12.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p> <p>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p> <p>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p> <p>13. 사회성과보상금</p> <p>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회성과보상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p> <p>14. 기타 보상금</p> <p>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p> <p>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p> <p>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p> <p>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p>	

출처 :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